

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200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년 8월 14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에서는 시민이 주도하는 자원봉사 활성화와 자원봉사를 통한 공공서비스 참여 및 이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2006년 (사)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
- 나. 이에 자원봉사 민관협력강화를 위한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출자·출연 개요

- 대상기관 : (사)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
- 관련법령
 - (공통)법령 : 민법(제32조),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 - (개별)법령 : 자원봉사활동기본법
 - 조 례 :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
- 출연금액 : 2,754,878천원

나. 주요사업

- 자치구자원봉사센터 지원 및 지역단위 자원봉사 역량 제고
 - 자치구센터 지원 : 지역단위 소모임 육성·연계 및 시·구 공동협력 체계 강화
 - 지역활동 역량강화 : 지역거점 상담가 및 아파트 리더 양성·심화 교육
 - 자원봉사 관리자 및 시민리더 역량강화: 학습플랫폼 및 자원봉사 관리자 아카데미 운영
- 소통·공유·협력을 통한 자원봉사 플랫폼 구현
 - 온라인 플랫폼 운영 :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민 중심의 자원봉사 소통 공간 운영
 - 민간자원 연계 : 공공기관·기업·자원봉사단체 간 네트워크를 통한 활동지원
 - 자원봉사 관리·운영 기능 강화 및 지역공동체 중심의 재난안전 활동 지원

다. 출자·출연의 필요성

- 자원봉사의 체계적 발전 및 민간 주도 자원봉사활동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설립한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,
- 자원봉사활동의 민·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하여 자원봉사활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승화·확산하기 위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18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자치행정과 주민지원팀 백명철 (☎2133-5830)